■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표 6] <신 설>**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제16조 관련)

1. 인증기관의 관리·지원·육성

등급분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가. 지원방법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	-	-	-
나. 국립수산물 품 질 관 리 원 사후관리	연1회	연1회	연1회	연2회
다.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규칙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면제	-	-	-
라.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누리집 공표	규칙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공표	규칙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공표	규칙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공표	-
마. 동일 인증기관 연속 2회 초과 인증 금지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면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면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면제	-

2.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방법

1) 등급결정 결과 활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때, 인증기관별 적용 등급은 등급결정 결과를 활용하는 시작연도의 직전 2년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제15조제4항에 따른 등급을 적용한다.

2) 법·영·규칙에 인증기관 등급제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활용한다.